

2023년 제4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 재공고

화성외국인보호소 2023년도 제4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직종	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형태
화성 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대원)	보호과 (교대근무)	1명(남)	-보호시설 및 보호외국인경비 -보호외국인 보호업무 보조 및 지원 등	신규채용
화성 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대원)	보호과 (교대근무)	1명(남)	-보호시설 및 보호외국인경비 -보호외국인 보호업무 보조 및 지원 등	대체인력 채용

2. 근로 조건

가. 신분 및 모집분야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보호경비대원)

나. 모집인원 : 2명(남)

다. 계약기간

○ 신규 채용 : 채용일 ~ 1년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재계약 및 무기 계약 전환 가능

○ 대체인력 채용 : 채용일 ~ 2024년 3월 31일

※ 원 근로자의 휴직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 있으나 휴직 대체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라. 근무형태

○ 보호경비대원 : 3교대 근무

▪ 1주(주간근무), 2·3주(야간근무)

- 주간(1주차: 월, 화, 수, 목, *금) 08:00 ~ 17:00 *금 08:00~16:00

- 야간(2주차: 월, 수, 금, 일*) 17:00 ~ 익일 08:00 *일 08:00 ~ 익일 08:00

- 야간(3주차: 화, 목, 토*) 17:00 ~ 익일 08:00 *토 08:00 ~ 익일 08:00

※ 화성외국인보호소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마. 보수 수준

○ 보호경비대원 : 월 고정급 2,597,220원(세전)

- 명절휴가비 연 1,100,000원

- 맞춤형 복지비 연 500,000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함

○ 공통사항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3. 응시대상 및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표 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학력 및 경력 : 제한사항 없음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별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 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별표 2>

<별표 2>

< 저소득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별표 3>

<별표 3>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

1.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률)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증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취득분까지 인정)

○ 관련분야(경비보안) 근무 경력자(최소 경력 1년 이상)

※ 단, 의무 복무기간 경력은 제외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TOEIC 700점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50점 이상으로 기타 언어도 이에 준하여 인정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 심사를 통하여 5배수 선발.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업무수행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으로 평가.

6.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3. 3. 30.(목) ~ 2023. 4. 6.(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3. 3. 30.(목) ~ 2023. 4. 6.(목)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 <u>등기우편</u> 접수(택배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 4. 7.(금)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3. 4. 10.(월)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4. 11.(화)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23. 4. 13.(목)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우편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우편번호 : 18538)

※ **결봉투에 “보호경비대원 응시원서(채용분야)” 표기. (예) 보호경비대원 응시원서 (신규채용/대체인력채용)**

※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 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오기재,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면접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필수) 응시원서 1부

○ (필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필수) 신분증 사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제출)

○ (필수)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필수)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선택) 경비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
 - 의무 복무 기간의 군 경력 제외
 - 경력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기관(회사)명(직인)과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만 인정
- (선택)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무도 자격증 사본 1부
 - 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하여 인정하며 품증은 단증으로 변경 시 인정
 -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하였을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단증만 인정(중복산정 불가)
 - 어학은 영어 TOEIC 70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50점 이상(기타 언어도 이에 준하여 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중복 산정 불가)
- (선택)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1부
- (선택)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사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 (선택)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발행)
- (선택)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 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합격자 등록 시

- ①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②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1부
-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④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8. 참고사항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조회(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등),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기재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수와 무관하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면접대기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담당자 윤현아, ☎ 031-8055-701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7.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아래 붙임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필수)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	☐ 제출 ☐ 미제출
② (필수) 응시원서 1부, 【붙임 2】	☐ 제출 ☐ 미제출
③ (필수) 이력서 1부, 【붙임 3】	☐ 제출 ☐ 미제출
④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 제출 ☐ 미제출
⑤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 미제출
⑥ (필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⑦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 제출 ☐ 미제출
⑧ (필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6】	☐ 제출 ☐ 미제출
⑨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7】	☐ 제출 ☐ 미제출
⑩ (필수)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8】	☐ 제출 ☐ 미제출
⑪ (선택)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9】 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⑫ (선택)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⑬ (선택) 무도 단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⑭ (선택)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⑮ (선택) 저소득층 증명서류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⑯ (선택)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⑰ (선택)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 제출 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응 시 원 서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2023년도 제4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화성외국인보호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년 월 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응시번호	2023-04-	성명	(한글)
응시분야	보호경비대원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휴대) 전화번호 - -		
○ 상기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 시 폐기) * 거부 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2023-04-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보호경비대원	성명	
2023년 월 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소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 제한으로 응시표는 면접 당일 교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변경금지[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대원)]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이 력 서 】

1. 기본정보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성별 :)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기타 연락처)	
E-mail		
현 주 소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2023.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5년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5년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 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 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있음 ☐ 없음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있음 ☐ 없음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있음 ☐ 없음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음 ☐ 없음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2023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대원)
생년월일	. . .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시행하는 2023년도 제4회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대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실시하는 자격,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 급 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1.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화성외국인보호소 채용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 능동감시자, 의심증상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증상자는 면접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2. 면접 당일 의무적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 면접응시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대기장소 및 면접대기실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손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 후 입실하여야 합니다.
 - ※ 손소독제 대기실 등 비치 예정
3. 전원 마스크 착용
 - 면접응시자는 면접 진행 전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면접대기실 내 대기 시 자리 이격 착석
 - 면접응시자는 당일 면접대기실(화성외국인보호소 대회의실)내 대기 시 타 면접응시자들과 이격하여 착석하여 주시고 상호 간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험 종료 후 기타 주의사항
 - 면접응시자는 당일 면접 종료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1339) 및 화성외국인보호소 채용 담당자(031-8055-701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응시자 외 외부인들의 면접장 출입 엄격 통제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면접진행요원의 안내 사항 엄수

응시자가 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